

안전인증소식

[Q&A]**전기용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 등이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게재하고자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외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Question 신규 개발한 멀티탭 콘센트의 인증대상 여부

멀티탭 콘센트를 고안하여 실용신안으로 등록 후 기술평가 청구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고 제품생산준비 중 KSC 8305 부도 5 등근형 콘센트와 모양이 달라 전기안전인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전기안전규정이나 표준치수규격의 변동이 없고, 단지 각도의 가능에 따라 플러그를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유권해석을 할 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기술 표준 KSC 8305의 부도 5의 그림 추가나, 비교에 접속구와 접지단자의 수는 제한은 없다 등, 전기안전과 표준규격의 변동 없이 형상만 제정이나 개정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nswer 문의하신 멀티탭 콘센트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원칙적으로 동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KSC 8305)에 적합한 경우에만 안전인증이 가능하나 특허제품 등 신개발 제품으로 동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국제기준 및 기타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 예외적으로 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문의한 제품도 안전성과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신개발제품인증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이 가능하니 이에 대하여는 안전인증기관과의 협의를 권장합니다.

Question 직류용 Liner Actuator 안전인증대상 여부

Liner actuator를 수입하여 이를 부품으로 작업다이와 책상을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Liner actuator는 DC 24V모터로 작동되며, AC 220/230V를 DC 24V로 변환하는 Control Box(어댑터)를 함께 수입할 경우, 어떤 인증/승인사항이 필요한지 궁금하며, 수입 전에 사전인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해당제품(어댑터 및 Liner actuator)이 CE 인증을 획득한 것이라면, 위의 국내인증과정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어댑터(Control Box : AC 220-230, DC 24V)를 사용하는 Liner actuator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제품에 사용되는 어댑터는 동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해당되므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CE마킹을 한 어댑터 일지라도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 제품에 대한 CB성적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CB시험성적서 검토를 거쳐 안전인증 신청제품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다른 안전기준과 동일한 국제표준(IEC규격)에 따라 시험 받은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시험면제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중고 게임기구 수입 시 안전검사

중고게임기 수입 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안전검사는 어느 시점(세관통과 전, 후 관계)에 해야하는지?, 안전검사 이전에 수입중고품의 개조는 가능한지?(예: 전원 110V에서 220V), 1회 수입물량이 다품종, 다모델(예 : 총50모델)인 경우도 처리기간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하는지?, 안전검사는 출장검사가 가능한한지?(다품종, 다모델의 경우 인증기관 시험장소가 협소 예상), 인증기관 안전검사 수수료는 현재 안전인증과 같은지 궁금합니다.



Answer 중고게임기는 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는 수입통관 후 30일 이내에 안전인증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신청모델 수에 관계없이 4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이 신청인에게 예상처리기간과 자연사유를 통보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수수료는 현재 안전인증수수료와 동일하며, 시험대상 시료가 중량물로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출장시험이 가능하고, 중고수입전기용품의 전원부 개조는 전기용품의 제조행위로 간주되므로 제조사가 아닌 수입판매업자가 전원부를 개조한 제품은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의 안전인증 면제 여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취득한 신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이 면제된다고 했는데 별도의 신고나 절차없이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제품은 복사기를 기반으로 한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를 구현하는 제품으로써 형식승인 취득 필수 제품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복사기로 구분되어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대상인데 정기공장검사 및 제품시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 제품에 부착하는 명판에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목인 복사기(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인 프린터)에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다른 형식승인 대상 품목인 팩시밀리 기능이 추가되어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아울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다른 제품시험과 공장심사·정기검사 등 일체의 안전성 검증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며, 전기용품 표시의무도 부과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Question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유아용 섬유제품)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KC) 발표 후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코드 및 조임끈

⇒ 조임끈 성능에 대해 규정내용인데, 며칠 전 자율안전인증을 반기위해 후드점퍼를 테스

트 한 적이 있는데 의류시험연구원에서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후드쪽에 조임끈이 들어 가는데, KC 법 개정으로 후드에는 조임끈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내용인데, 그 내용이 맞는지요? 저희 자사에서는 10Cm 이하는 주의사항 표기 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후드 조임끈 경우 조임끈에 도매을 주어 조임끈이 빠지지 않게 하여 생산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세트상품 모자라벨건

⇒ 자사에서 나오는 상품 중에 내의류 중 세트상품이 있는데, 상하복과 모자상품을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같은 소재이므로 상하복에 혼용을 라벨을 같이 표기하고 모자에는 별도 표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유아용 모자 크기상 혼용을 라벨 표기하기가 힘듬) 이런상품도 모자에 꼭 혼용을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지요?

3) 인증번호 표기건

⇒ 자사에서 나오는 상품에는 혼용을 라벨에 인증마크, 인증번호, 인증기관, 인증날짜 순으로 표기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타 회사 제품을 보면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만 부착 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만 부착하여 판매해도 되는지요?

A

nswer 귀하게서 문의한 유아용섬유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신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서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아용섬유제품 안전기준(4안전요건의 의거 KSK 0941)에 적합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KSK0941의 요구사항(유아복의 후드와 목부분은 조임끈, 장식성 코드, 가능성 코드가 후드나 목 주위에 있도록 디자인, 생산 또는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에 따라 조임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유아복 상하 및 모자의 세트 상품의 표시방법일 경우에는 현행 유아복 상하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라벨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모자는 포장 또는 스티커, 꼬리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마크 표시에 있어서 과거 KPS마크에서 KC마크로 변경되면서 신고일자, 신고기관 등은 없어 졌고, “KC마크도안과 자율안전확인 신고필증번호” 만 표시하면 됩니다.

